

2019년도  
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 
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 
(공정거래위원회 소관)

2020. 5.

대한민국정부



## - 목 차 -

(공정거래위원회 : 91건)

1. 공정위 지방사무소가 신규직원 위주로 구성되어 업무효율 저하가 우려되므로 직원 재배치 등의 인사 방안을 강구할 것 .....1
2. 2017년 9월에 신설된 기업집단국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능을 재정비 할 것 .....1
3. 과징금 징수·수납업무를 직원 한명이 담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.....1
4. 분쟁 조정 절차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.....1
5. 사건처리 기간이 도과된 사건이 다수 발생하였는데 공정위의 사건처리 역량 강화 및 사건처리기간 단축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 ....1
6.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관행이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.....2
7. 공정위 수기결재 문서에 생산등록번호, 등록일, 결재일 등이 누락되는 등 문서관리가 안 되고 있으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.....2
8. 외부인 접촉 신고와 관련하여 접촉보고가 누락되고 면담기록이 작성되지 않는 등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개선책을 마련할 것 .....2
9. 외부인 접촉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대면조사를 통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할 것 .....3
10.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를 자율적으로 도입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자율준수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.....4
11. 기술유용감시팀, 기술심사자문위원회 등의 운영에 노력하여 중소기업에 기술 유출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 .....4
12. 공정위가 자율준수프로그램 관련 지침·예규 등을 통해 연합회에 혜택을 주는 등 공정위와 연합회가 제도적으로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으므로, 이러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.....4

13. 개방형 직위인 할부거래과장 채용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채용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것 ..... 4
14.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운영을 공정위가 소비자원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할 것 ..... 5
15. 다국적 의료기기 회사가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비급여 의료기기의 원가를 부풀려 고가로 수요자에 공급하는 등 폭리를 취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조사할 것 ..... 5
16. 직권인지조사가 '필요한 때에 조사한다'는 규정을 바탕으로 공정위의 자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있으므로, 자의적인 조사 행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..... 6
17. 시장지배적인 글로벌 동영상 사이트 업체가 동영상 게재자에 대한 광고 제한 기준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조사할 것 ..... 6
18. 포털업체가 자신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에서 이용자가 검색하는 경우, 검색 결과에 자사가 출시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 로고만 노출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조사할 것 ..... 6
19. 디지털플랫폼 시장에서 국내 및 해외기업이 차별 없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망사용료 차별문제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검토할 것 ..... 6
20. 골프존 문제에 대해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할 것 ..... 6
21. 의약품 거래시장에서 특정업체를 거치지 않고는 바로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할 수 없는 거래관행이 만연한데, 이에 대하여 조사할 것 ..... 7
22. 보험사가 홈쇼핑을 통해 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가입자에게 고가의 사은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 ..... 7
23. 금융기관이 중소 소프트웨어업체와 체결한 계약에 불공정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조사할 것 ..... 7
24. 완성차 업체가 전속 정비업체에 대해 순정부품 구입정도를 평가 지표로 삼고 있고, 순정부품 구매실적을 체크하는 등 사실상 순정부품 구입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조사할 것 ..... 7

25. 공정위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제한을 목적으로 발송하는 문서에 담합주도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..... 7
26. 중견 건설회사들이 LH분양토지를 싹쓸이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는데 이에 대해 조사할 것 ..... 8
27. 리니언시 제도가 기업에 대한 면죄부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..... 8
28. 통신사 및 유선방송 기업결합 건과 관련하여, 소비자 후생, 시정 조치 이행 가능성, 알뜰폰 시장의 경쟁제한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할 것 ..... 9
29. 국내 조선사 기업결합 건의 기업결합심사를 조속히 완료할 것
30. 엔터테인먼트 업체의 일감몰아주기, 부당지원행위에 대하여 조사할 것 ..... 9
31. 기업 합병에 대한 심사 시에 합병비율을 산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업에게 유리한 자료를 참조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 바,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 ..... 9
32. 상증세법 개정안과 달리 공정거래법에서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을 산정시 간접지분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타당한 지에 대해서 검토할 것 ..... 10
33. 중견기업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부당성, 경쟁제한성 및 경제력 집중효과 등의 입증 역량을 제고할 것 ..... 11
34. 현행 부당지원행위 과징금 부과 산정 기준은 부당이득 환수나 위법행위 억제에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보완책을 마련할 것 ..... 11
35. 해외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제재 방법을 강구할 것 ... 11
36. 중견기업이 원래 구매부서가 하던 업무를 계열사를 만들어서 수행하게 하여 일감을 몰아아주고 납품가를 기존 납품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책정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조사할 것 ..... 11
37. 중견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처리실적이 미미하므로 공정위 조사역량을 보강할 방법을 강구할 것 ..... 12

- 38. 일부 대기업집단이 물류 계열사를 세워 기업집단의 물류 물량을 몰아줘서 기업 규모를 키운 행위에 대하여 조사할 것 .....12
- 39. 향후 지배구조 개선 모범사례 선정시 기업집단 시책 준수 여부 등 다양한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할 것 .....12
- 40. 외식업 등을 영위하던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명목상으로 계열 분리한 후, 기존 기업집단으로부터 일감을 독식하여 규모를 키웠다는 의심이 있는데, 이에 대하여 조사할 것 .....12
- 41. 대형조선사가 설계 역량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물량을 수주하여 제작비용이 상승한 것을 협력업체에 전가한 행위에 대해 조사할 것 .....12
- 42. 대형조선사가 일방적으로 협력업체를 상대로 작업별 능률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정황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조사할 것 .....13
- 43. 조선업 3사가 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조사시 자동삭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자료를 은폐하려한 정황이 있으므로 이러한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조사할 것 .....13
- 44. 자동차부품 회사의 금형탈취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공정위 퇴직자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의심이 있는데, 이 사건 조사 진행 과정에서 퇴직자 접촉보고가 제대로 되었는지. 부당한 압력이나 로비가 없었는지 내부 조사할 것 .....13
- 45. 자동차부품 회사가 금형을 일방적으로 회수한 사건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.....14
- 46. 기술자료 유용 근절에 대한 공정위의 사건 처리실적이 미미하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.....14
- 47. 기술유용행위 관련 공정위 조사의 기술력·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기술심사자문위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 .....14
- 48. 하도급실태조사시 일관된 분석과 비교가 가능하도록 조사업체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 실태조사 후 분석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.....15
- 49. 하도급실태조사시 1차 하도급 관계 외에 2차 이하의 하도급 관계에 대해서도 자료를 보유하고 관심을 가질 것 .....15

50. 하도급 별점제도에 대한 실효성 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 
상황이므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.....15
51.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 하청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 
신고회사에 대한 보복행위를 근절하려는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
52. 하도급법 상습위반자가 계속하여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은데,  
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.....16
53. 동반성장위원회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가 하도급법 위반  
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는데, 해당 기업에 대한 선정결과를  
취소하고, 국토부 상호협력 평가점수에도 처분내용이 반영  
되도록 요구할 것 .....16
54. 하청업체에 지급되어야 할 노무공량을 빼돌렸다는 내용의 하도급법  
위반신고 사건에 대한 심사불개시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 
고려, 이에 대해 재조사할 것 .....17
55. 학습지 사업자가 총판 대리점에 대해 물량밀어내기, 반품 제한  
등을 한 혐의가 있으므로 조사할 것 .....17
56. 완성차 업체와 정비협력업체 간 거래를 가맹거래로 볼 수  
있는지에 대해 검토할 것 .....17
57. 가맹본부의 원가공개,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부여 등의 문제는  
가맹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성을 논의할 것 .....17
58. 가맹본부의 원가공개, 예상매출액 공개, 가맹점주 단체협의권  
보장 등의 제도도입은 가맹본부의 혁신 유인 저해 등의 부작용이  
있을 수 있고 가맹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대책을  
마련할 것 .....18
59. 일부 대형유통업체가 계열사 편의점 영업지역 내에 가맹점 형태의  
소매점포를 출점하는 방법으로 가맹사업법 규제를 회피하려는  
것과 관련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.....18
60. 치킨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 추상적으로 규정된  
해지사유를 근거로 가맹점주에 즉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과  
관련하여, 해당 가맹점주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  
구할 것 .....19

61.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의무화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하여, 이에 대한 규제영향 등을 검토할 것 .....19
62. 편의점 간의 거리제한을 자율규약 형태로 하고 있고 이에 공정위가 동의하였는데 결국 이것이 담합 조장 행위가 아닌지 검토할 것 ..... 20
63. 글로벌 샌드위치 가맹본부가 매출이 높은 가맹점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별점을 부과하여 폐점 조치하고 직영점으로 전환한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할 것 ..... 20
64. 일부 커피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출점 제한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것 ..... 20
65. 가맹분야에 있어 적극적이고 신속한 분쟁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..... 21
66. 등산의류 업체가 매출이 높은 고속도로 휴게소 대리점을 일방적으로 직영화하면서, 인건비, 운영경비 등을 기존 점주에게 부담하게 하는 등의 부당행위에 대해 조사할 것 ..... 21
67. 복합쇼핑몰이 입점업체와 최저수수료를 보장하는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 ..... 21
68. 배달앱이 가맹점 간 영역구역을 침범하는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파악할 것 ..... 22
69. 인터넷 쇼핑몰이 최저가보상제로 발생한 비용을 납품업체에 매입단가 인하, 장려금 또는 광고비 수취 등의 방법으로 전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조사할 것 ..... 23
70. 가맹사업이나 대규모유통업에 대한 실태조사시 일관된 분석과 비교가 가능하도록 실태조사 후 분석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..... 23
71. 가맹점들 사이에는 영업구역이 정해져 있고 침범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, 배달앱이 각 가맹점 간 영업구역을 침범할 수 있도록 마케팅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 방안을 강구할 것 .... 23
72. 프랜차이즈 사업의 원가공개, 마진공개 등에 대해 규정하는 시행령이 있는데 기업 활동을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..... 24

- 73. 공정위의 정책 기조가 프랜차이즈 산업에 상당히 부정적, 규제의 중복으로 이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성장이 정체되는 것을 경계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..... 24
- 74. 편의점 간 거리제한 규제를 사업자 간 자율규제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공정위가 이에 대해 동의하는 것은 경쟁주창자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지 면밀히 검토할 것 ..... 25
- 75. 서울시가 제로페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편의점 가맹점에 제로페이 가입신청서를 일괄발송하면서, 특정 사업자단체의 가입신청서만 동봉하여 보내고 있어 서울시에 재발방지를 요청할 것 ..... 25
- 76. 폐업한 상조회사 서비스를 다른 회사의 상조서비스로 갈아타는 '내상조 그대로' 서비스를 모든 피해자에게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..... 26
- 77. 상조회사가 가입자로부터 납입 받는 상조금의 50%를 은행에 예치하는 제도 개선안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..... 26
- 78. 아모레퍼시픽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에 대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과징금을 조속히 재산정하여 부과할 것 ..... 26
- 79.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, 인력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위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 ..... 27
- 80.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업이 CCM인증을 받는 등 CCM 제도 운영에 있어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책을 마련할 것 ..... 27
- 81. 완성차 업체의 순정부품 관련 광고가 타 부품업체의 인증부품 품질을 오인하게 할 우려는 없는지 부당한 표시·광고 여부를 조사할 것 ..... 27
- 82. 국내 항공사 마일리지의 유효기간, 사용방법 등이 소비자에게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마일리지 유효기간 폐지, 파트캐시 제도, 보너스 좌석 차별 폐지 등의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 ..... 27
- 83. 웹툰작가 및 플랫폼사업자 간 표준계약서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..... 28

- 84. 글로벌 OTA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글로벌 OTA의 불공정약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 .....28
- 85. 약관심사 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하고 금융위에 금융약관 심사 결과 통보 빈도를 높이는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약관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.....29
- 86. 동의의결제도 및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실적이 저조하므로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.....29
- 87. 부과 과징금 산정 방식과 관련하여 기존 관련 매출액 기준에서 평균매출액 기준 또는 기업규모별 부과 방식 등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.....30
- 88. 공정위의 시행령, 시행규칙 등 개정현황을 분석한 결과, 규제 강화와 규제완화의 비율이 5:1로 나타나는 등 규제 강화 경향이 강한 바, 이는 시장경제를 위축시키는 효과로 작용하므로 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 .....32
- 89.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건이 법원에서 패소함에 따라 과도한 환급가산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, 공정위의 경제분석 역량 확충 등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.....32
- 90. 공정위의 조사권 남용 억제 및 공정위 조사에 대한 기업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공정위 조사절차 규정을 법제화하여 투명하게 운영할 것 .....32
- 91.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경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접수되는 고발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우리나라 기업 및 경제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폐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 .....33

(한국소비자원 : 12건)

- 1. 음식점 폐업 등으로 피해를 보는 예비신혼부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분쟁해결기준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등 해결 방안을 검토할 것 .....34
- 2. 스포츠, 레저, 건강 등 소비트렌드가 변화하며 헬스장·피트니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맞춤형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 .....34

3. LG건조기 자동세척 하자에 대한 소비자원 조치결과가 소비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,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것 ..... 35
4. 고령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지자체 협업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 고령 소비자가 디지털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 ... 35
5. 해외리콜 제품의 국내 지속 유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바,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하여 근본적 유통 차단 대책을 마련할 것 ..... 36
6. 유사홈쇼핑 및 케이블 TV를 통해 다양한 사은품으로 보험가입을 유도 하는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검토할 것 ..... 37
7. 외교부 여행정보로 인한 여행상품 계약 취소 시 무료취소 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약관 및 법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..... 38
8.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은 당사자 일방의 거부 시 불성립되므로 조정 결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검토할 것 ..... 38
9. 집단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..... 39
10. 품질 및 안전성 검사를 위해 구입한 시험검사용 물품·시료를 관리 하는 규정 및 시스템에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, 관리 규정 및 시스템을 개선할 것 ..... 39
11. 대학생 광고감시단의 부당광고 감시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..... 39
12. 퇴직 예정자 교육과 관련한 예산 효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할 것 ..... 39

(한국공정거래조정원 : 5건)

1. 최근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조정기간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 검토할 것 ..... 41
2. 최근 조정성립률이 하락하고 조정기간은 길어지는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당사자의 조정 참가를 의무화하고 조정이 성립되면 당사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..... 41
3.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분쟁조정이 종료된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는데, 관련 보고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..... 41
4.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를 보다 활성화할 것 ..... 41
5.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(CP) 등급평가 위원회 평가기준과 능력이 상이한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 검토할 것 ..... 42



## 《공정거래위원회 소관》

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1. 공정위 지방사무소가 신규직원 위주로 구성되어 업무효율 저하가 우려되므로 직원 재배치 등의 인사 방안을 강구할 것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방사무소 신규직원과 본부 경력직원 간 교체 시행 ('20.4월 정기전보)</li> <li>○ 향후 신규 7급 직원은 先 본부 - 後 지방 배치를 원칙으로 운영할 계획</li> </ul>
2. 2017년 9월에 신설된 기업집단국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능을 재정비 할 것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업집단국 내 업무 분장 조정 등 기능 재정비 추진</li> <li>-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시책의 수립·조정업무를 과별로 세분화하는 등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과별 분장사무 재편</li> <li>* 「공정거래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 개정 중(5.21. 법제처 심사 완료, 5월말~6월초 공포·시행 예정)</li> </ul>
3. 과징금 징수·수납업무를 직원 한명이 담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징수업무 지원을 위한 정원 1명 증원 직제 개정 완료 ('20.4.9.)</li> <li>○ 징수업무 담당으로 지역인재 수습직원 2명 추가 배치('20.4.20.)</li> </ul>
4. 분쟁 조정 절차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분쟁조정 신청대상 확대 등 법령 개정을 통한 분쟁조정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임</li> <li>- 시정조치 건 포함, 신청 각하대상 축소 등 제도개선 노력도 지속할 계획임</li> </ul>
5. 사건처리 기간이 도과된 사건이 다수 발생하였는데 공정위의 사건처리 역량 강화 및 사건처리기간 단축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장기사건 관리·감독 강화, 분쟁조정 활성화 등을 추진하여,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음</li> </ul>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</p>
<p>6.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관행이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모니터링 등 내부통제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업무추진비의 정확한 집행을 위해 업무추진비 총괄부서에서 각 국별 카드 사용에 대해 모니터링 실시(매월)</li> </ul> </li> <li>○ 업무추진비 관련 교육 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기적인 교육 실시를 통해 적절한 집행유도(반기 별)</li> <li>- 간담회 등으로 업무추진비 사용 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집행은 지양토록 조치</li> </ul> </li> <li>○ 업무추진비 내역공개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대상을 실·국장급으로 확대하고 공개 자료에 참석인원,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포함시켜 투명성 제고</li> </ul> </li> </ul>
<p>7. 공정위 수기결재 문서에 생산등록번호, 등록일, 결재일 등이 누락되는 등 문서관리가 안 되고 있으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문서관리절차*의 정기적 공지 또는 직원교육 등을 통해 수기결재문서의 필수기재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음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20px;">*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, ‘온나라 문서 20 사용자 매뉴얼’(행정안전부)</p>
<p>8. 외부인 접촉 신고와 관련하여 접촉보고가 누락되고 면담기록이 작성되지 않는 등 제도가 제대로 운영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외부인 접촉 보고) 공정위는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요건의 외부인과 접촉을 보고토록 하는 「공정위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」을 부처</li> </ul>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</p>
<p>되지 않고 있으므로 개선책을 마련할 것</p>	<p>최초로 도입한('18.1월) 이후,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감찰활동, 교육 및 홍보, 관리규정 개정('19.2월)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</li> <li>- 향후, 외부인 접촉 신고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, 지속적으로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·추진하겠음</li> <li>○ (면담기록 작성) 위원회는 그간 지속적 제도 개선에 따라 면담 관리 방식, 공식적 의견청취절차 등에서 '12년 면담 지침보다 더욱 강화된 면담·접촉 관련 규율을 시행하고 있음</li> <li>- 공식적 의견청취절차를 도입하여 이 외에는 개별 면담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,</li> <li>- 예외적으로 대면설명이 필요한 경우, 녹화·녹음·속기 기록을 남기고 있음</li> </ul>
<p>9. 외부인 접촉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대면 조사를 통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 하도록 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감사원은 외부인 접촉사실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정위 공무원 98명에 대해 관련규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('19.5.)</li> <li>○ 공정위는 의심대상자 전원에 대해 조사 및 확인절차를 거쳐('19.5~6월), 「공정위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」에 따른 보고 의무 누락이 확인된 52명에 대하여 조치(경고3, 주의49) 완료('19.7.) 하였음</li> </ul>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</p>
<p>10.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를 자율적으로 도입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자율준수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CP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신설 등 CP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CP 운영규정*을 개정하였음('19.10월)</li> <li>* 범위반이력 사업자의 등급평가 신청 제한 삭제, 공표명령 면제 신설 등</li> <li>- 향후 법적근거 마련 등 추가개선 및 활성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임</li> </ul>
<p>11. 기술유용감시팀, 기술심사자문위원회 등의 운영에 노력하여 중소기업에 기술 유출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한시조직인 기술유용감시팀을 정식 과로 승격*시키고, 분야별 기술 전문 인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 중</li> <li>* 행안부에 기구 승격(팀→과) 및 정원증원(+3명)을 신청('20.4월)</li> <li>- 기술심사자문위원회 자문과 더불어 자문위원 및 전문가 개별 면담·심층자문을 통해 기술자문의 실효성을 보장</li> </ul>
<p>12. 공정위가 자율준수프로그램 관련 지침·예규 등을 통해 연합회에 혜택을 주는 등 공정위와 연합회가 제도적으로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으므로, 이러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공정거래조정원의 「CP 등급평가 운영지침」 개정을 통해 연합회의 CCP 자격증 기재란*을 삭제하였음('19.12월)</li> <li>* 등급평가신청서 상 연합회의 CCP 자격증 보유 기재항목 삭제, 평가가이드라인에서도 관련 내용 삭제</li> </ul>
<p>13. 개방형 직위인 할부거래과장 채용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채용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채용 관련 자료 중 개인정보포함 자료 및 인사처 선발심사 자료를 제외한 일체 자료는 기 제출하였음</li> <li>* 할부거래과장은 개방형직위 공모 규정에 따라 인사처 중앙선발심사위원회의 선발 절차를 거쳐 채용</li> </ul>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</p>
<p>14.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운영을 공정위가 소비자원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1372소비자상담센터(시스템)는 소비자 기본법상 국가가 소비자 불만·피해 처리 기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조항(제16조) 및 하위규정에 따라 소비자원에 그 운영을 위탁하고 있음</li> <li>- 1372는 소비자원과 10개 민간 소비자단체 및 지자체 간 상담업무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( '10.1월) 시킨 통합시스템임</li> <li>○ 소비자상담업무는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으로 이어지는 매우 중요한 업무로서, 기본적으로 소비자불만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비자원이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</li> <li>- 소비자기본법*과 소비자원 정관 등에 따라 소비자 상담업무는 소비자원 출범 당시( '87.7월)부터 소비자원이 담당해오던 고유 업무임</li> </ul> <p>* 소비자기본법 제35조(소비자원 업무) 제1항 제5호(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) 등</p>
<p>15. 다국적 의료기기 회사가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비급여 의료기기의 원가를 부풀려 고가로 수요자에 공급하는 등 폭리를 취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조사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의료기기의 가격 책정은 심평원의 심사를 거쳐 이루어지는 만큼, 공정위가 조사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음</li> <li>○ 다만, 앞으로 의료기기 시장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음</li> </ul>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시정·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</b></p>
<p>16. 직권인지조사가 ‘필요한 때에 조사한다’는 규정을 바탕으로 공정위의 자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있으므로, 자의적인 조사 행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정거래법 개정('20.5월)으로 조사권 남용 통제장치*가 대폭 보완되었음</li> <li>- 개정법률 시행('21.5월)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 법령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</li> <li>* 조사결과 서면통지, 일시보관조서 교부 및 보관자료 반환의무, 조사 전 공문 교부, 조사 시간·기간 제한, 기간 연장시 공문 교부, 피조사업체 등 의견진술기회 부여 등</li> </ul>
<p>17. 시장지배적인 글로벌 동영상 사이트 업체가 동영상 게재자에 대한 광고 제한 기준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조사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</li> <li>-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범위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음</li> </ul>
<p>18. 포털업체가 자신이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에서 이용자가 검색하는 경우, 검색 결과에 자사가 출시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 로고만 노출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조사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관련 행위가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</li> </ul>
<p>19. 디지털플랫폼 시장에서 국내 및 해외기업이 차별 없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망사용료 차별 문제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검토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망 사용료 차별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과 함께 위법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겠음</li> </ul>
<p>20. 골프존 문제에 대해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골프존에 대한 두차례의 시정조치('15, '18)가 모두 대법원에서 패소한 상황임</li> <li>○ 관련 사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골프존과 이해관계자들 간 갈등의 폭이 좁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</li> </ul>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</p>
<p>21. 의약품 거래시장에서 특정업체를 거치지 않고는 바로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할 수 없는 거래관행이 만연한데, 이에 대하여 조사할 것</p>	<p>○ 의약품 시장에서 도매상의 피해를 파악하는 등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 모니터링하겠음</p>
<p>22. 보험사가 홈쇼핑을 통해 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가입자에게 고가의 사은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</p>	<p>○ 해당 사안은 금감원이 보험업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됨</p> <p>○ 공정위·금융위 MOU( '15.1.)에 따라 중복조사 방지 차원에서 현재 공정위는 별도로 조사를 하고 있지는 않으나,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향후, 금감원의 조치가 있게 되면 이를 검토하여 공정위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하겠음</li> </ul>
<p>23. 금융기관이 중소 소프트웨어업체와 체결한 계약에 불공정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조사할 것</p>	<p>○ 금융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계약서 내용을 점검 중임('20.2월 ~ )</p> <p>○ 이를 바탕으로 불공정계약조항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임</p>
<p>24. 완성차 업체가 전속 정비업체에 대해 순정부품 구입정도를 평가 지표로 삼고 있고, 순정부품 구매 실적을 체크하는 등 사실상 순정부품 구입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조사할 것</p>	<p>○ 완성차업체와 전속 정비업체 간 순정부품 관련 거래 현황, 업계에서 제기되는 민원 등을 모니터링하겠음</p>
<p>25. 공정위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제한을 목적으로 발송하는 문서에 담합 주도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</p>	<p>○ 관계 법령*에 따르면, 입찰참가제한을 함에 있어 담합 주도 여부에 따라 제재기간을 달리하고 있음</p> <p>* 국기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「별표2」</p>

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								
	<table border="1" data-bbox="821 293 1465 600"> <thead> <tr> <th data-bbox="821 293 1353 376">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</th> <th data-bbox="1353 293 1465 376">제재 기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821 376 1353 421">1.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</td> <td data-bbox="1353 376 1465 421">2년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821 421 1353 465">2. 담합을 주도한 자</td> <td data-bbox="1353 421 1465 465">1년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821 465 1353 600">3.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, 수주 물량 또는 계약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등을 위해 담합한 자</td> <td data-bbox="1353 465 1465 600">6개월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 data-bbox="786 629 1474 846">○ 공정위는 이를 감안하여, 앞으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담합 주도 여부 등에 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겠음</p>	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	제재 기간	1.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	2년	2. 담합을 주도한 자	1년	3.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, 수주 물량 또는 계약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등을 위해 담합한 자	6개월
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	제재 기간								
1.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	2년								
2. 담합을 주도한 자	1년								
3.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, 수주 물량 또는 계약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등을 위해 담합한 자	6개월								
26. 중견 건설회사들이 LH분양토지를 싹쓸이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는데 이에 대해 조사할 것	<p data-bbox="786 891 1474 981">○ 관련 일감몰아주기행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임</p> <p data-bbox="786 1014 1474 1104">- 조사 결과 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도록 하겠음</p>								
27. 리니언시 제도가 기업에 대한 면죄부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	<p data-bbox="786 1160 1474 1496">○ 공정위는 그간 리니언시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담합 강요자에 대한 감면 배제('07년), 2개사가 가담한 담합에서 2순위 감면신청자의 감면 배제('12년), 감면 후 5년 내 새로운 법 위반시 감면 배제('16년) 등 제도개선을 해왔음</p> <p data-bbox="786 1552 1474 1720">○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, 개선·보완하도록 하겠음</p> <p data-bbox="786 1753 1474 2045">* 가령, 1순위 감면신청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도 2순위 감면신청자는 그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, 그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제한(공정위가 자체적으로 먼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지위 불인정)하는 방안 검토</p>								

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28. 통신사 및 유선방송 기업결합 건과 관련하여, 소비자 후생, 시정조치 이행 가능성, 알뜰폰 시장의 경쟁 제한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할 것	<p>○ 공정위는 해당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, '19.12.11. 유료방송시장에 대해 수신료 인상 제한, 채널수 감축금지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함</p> <p>- 다만, 알뜰폰을 포함한 이동통신시장*은 점유율 증가분이 크지 않고,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에서의 지위(3위) 등을 고려하여 경쟁 제한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함</p> <p>* 기업결합 심시기준상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안전지대에 해당</p>
29. 국내 조선사 기업결합 건의 기업 결합심사를 조속히 완료할 것	<p>○ 현재 해당 건의 경쟁제한성에 대해 판단 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임</p> <p>- 참고로 해외경쟁당국 중 EU는 9월중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고 일본, 중국의 일정은 미정인 상태임</p>
30. 엔터테인먼트 업체의 일감몰아주기, 부당지원행위에 대하여 조사할 것	<p>○ 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음</p> <p>- 법 위반 혐의 발견 시 조사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임</p>
31. 기업 합병에 대한 심사 시에 합병 비율을 산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업에게 유리한 자료를 참조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 바,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	<p>○ 기업 합병시 합병비율을 공정하게 산정해야한다는 점에 공감</p> <p>- 다만, 합병비율 산정은 금융위 소관 자본시장법에서 이미 규율*하고 있으므로, 공정위 차원의 보완책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은 법집행의 통일성 및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</p> <p>*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</p>

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주권상장법인 : 기준시가에서 30% 범위내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</li> <li>② 非주권상장법인 :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산술평균한 가액</li> </ul> <p>○ 추후 소관 부처인 금융위와 소통하여 합병비율이 공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</p>
<p>32. 상증세법 개정안과 달리 공정거래법에서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을 산정시 간접지분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타당한 지에 대해서 검토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규제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간접 지분에 대해서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의 취지는 공감</li> <li>○ 그러나, 상증세법상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는 지분을 활용의 목적과 방식이 서로 상이하어 동일 적용은 곤란</li> <li>* 상증세법은 연 1회 연말 시점에서 지분율을 산정하나, 공정거래법은 전체 거래기간 동안의 지분율을 산정</li> <li>○ 사업자들이 거래상대방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포함 여부를 사전에 명확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시대상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간접지분율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하나,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</li> <li>○ 전면개편안 마련 당시 간접지분 규제 필요성, 예측가능성, 공시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50% 초과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규제하는 방식 채택</li> </ul>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</p>
<p>33. 중견기업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부당성, 경쟁제한성 및 경제력 집중 효과 등의 입증 역량을 제고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경제분석 및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자체 입증 역량을 강화해 가고 있음</li> <li>- 국세청 과세정보 공유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도 병행하고 있음</li> </ul>
<p>34. 현행 부당지원행위 과징금 부과 산정 기준은 부당이득 환수나 위법행위 억제에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보완책을 마련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정거래법은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득의 규모를 참작하도록 하고(법 55조의3), 과징금 상한*을 매출액 기준으로 규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시지남용: 매출액의 3%, 담합: 매출액의 10%, 부당지원(사익편취): 매출액의 5%</li> </ul> </li> <li>○ 부당지원행위는 제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원주체뿐 아니라 지원객체에 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 바 있으며(13년),</li> <li>-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상한을 현재보다 2배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</li> </ul>
<p>35. 해외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제재 방법을 강구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해외계열사 관련 공시를 강화*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</li> <li>* 국내계열사에 직·간접 출자한 해외계열사 주식소유·순환출자 현황, 총수일가 20% 이상 지분보유 해외계열사 현황에 대한 공시의무를 동일인에게 부여</li> </ul>
<p>36. 중견기업이 원래 구매부서가 하던 업무를 계열사를 만들어서 수행하게 하여 일감을 몰아주고 납품가를 기존 납품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책정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조사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임</li> <li>- 조사 결과 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도록 하겠음</li> </ul>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</p>
<p>37. 중견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처리 실적이 미미하므로 공정위 조사역량을 보장할 방법을 강구할 것</p>	<p>○ 국세청 과세정보 공유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법집행을 위해 노력하겠음</p>
<p>38. 일부 대기업집단이 물류 계열사를 세워 기업집단의 물류 물량을 몰아줘서 기업 규모를 키운 행위에 대하여 조사할 것</p>	<p>○ 범위반 혐의 발견 시 엄중 제재하겠음</p> <p>- 다만, 해당기업의 절대적인 물류매출이 동일 기업집단 소속 특정회사의 해외 자회사 관련 물류매출이고, 특수관계인 지분율도 사익편취 규율대상에 미치지 않는 등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</p>
<p>39. 향후 지배구조 개선 모범사례 선정시 기업집단 시책 준수 여부 등 다양한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할 것</p>	<p>○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이 지속됨에 따라 현재 별도로 모범사례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지는 않음</p> <p>○ 향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발표 시 보다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정보 공개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</p> <p>* 현재 관련 연구용역 진행 중</p>
<p>40. 외식업 등을 영위하던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명목상으로 계열분리한 후, 기존 기업집단으로부터 일감을 독식하여 규모를 키웠다는 의심이 있는데, 이에 대하여 조사할 것</p>	<p>○ 현재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임</p> <p>- 사실관계 확인 및 범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겠음</p>
<p>41. 대형조선사가 설계 역량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물량을 수주하여 제작비용이 상승한 것을 협력업체에 전가한 행위에 대해 조사할 것</p>	<p>○ 대형조선사의 불공정하도급행위에 대하여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부과함</p> <p>- 지난 '18.10월부터 대형조선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하였으며,</p>

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개 조선사*의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,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조치함</li> <li>* 현대중공업('19.12월), 삼성중공업('20.4월)</li> <li>- 대우조선해양도 위원회에 안건상정이 완료된 상태이며, 하반기 심의 예상</li> </ul>
<p>42. 대형조선사가 일방적으로 협력업체를 상대로 작업별 능률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정황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조사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형조선사의 불공정하도급행위에 대하여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부과함</li> <li>- 지난 '18.10월부터 대형조선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하였으며,</li> <li>- 2개 조선사*의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,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조치함</li> <li>* 현대중공업('19.12월), 삼성중공업('20.4월)</li> <li>- 대우조선해양도 위원회에 안건상정이 완료된 상태이며, 하반기 심의 예상</li> </ul>
<p>43. 조선업 3사가 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조사시 자동삭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자료를 은폐하려한 정황이 있으므로 이러한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조사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현대중공업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제재함</li> <li>- PC·하드디스크 교체, 자료 은닉 등의 조사방해 행위를 확인하여 법인 및 임직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</li> </ul>
<p>44. 자동차부품 회사의 금형탈취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공정위 퇴직자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의심이 있는데, 이 사건 조사 진행 과정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적하신 바와 같은 공정위 퇴직자가 부당한 압력이나 로비를 행사한 적은 없었으며 조사 진행 과정에서 퇴직자 접촉보고가 정상적으로 이뤄졌음</li> </ul>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</p>
<p>에서 퇴직자 접촉보고가 제대로 되었는지. 부당한 압력이나 로비가 없었는지 내부 조사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동 사건에 대한 재신고('20.2.27.)가 접수되어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가 사건심사착수를 결정하여 조사를 진행 중임</li> </ul>
<p>45. 자동차부품 회사가 금형을 일방적으로 회수한 사건과 관련하여 수급 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금형 관련 비용 부담 주체, 회수 절차 등에 관한 모범 거래관행을 반영한 ‘금형 거래 가이드라인’ 을 마련 중임</li> <li>- 아울러, 자동차·기계 등 4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금형 거래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할 예정</li> </ul>
<p>46. 기술자료 유용 근절에 대한 공정위의 사건 처리실적이 미미하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술유용사건 전담조직('17.11월)이 만들어진 이후 집중적으로 사건 처리중</li> <li>* 두산인프라코어('18.7월), 아너스('18.10월), 현대건설기계('19.5월), 한화('19.9월)</li> <li>** 이외 현재 3건 소회의 안건 상정(20.5월)</li> <li>- 한시조직인 기술유용감시팀을 정식 과로 승격*시키고, 분야별 기술 전문 인력을 보강하여 사건처리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 중</li> <li>* 행안부에 기구 승격(팀→과) 및 정원증원(+3명)을 신청('20.4월)</li> </ul>
<p>47. 기술유용행위 관련 공정위 조사의 기술력·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기술심사자문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술심사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자문을 받는 형식 외에 자문위원 및 전문가 개별 면담·심층 자문을 통한 기술자문의 실효성을 보강</li> </ul>

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또한, 공정위-특허청 시범사업으로 기술자료 여부에 대한 특허청의 판단을 통해 전문성을 보강할 예정</li> </ul>
<p>48. 하도급실태조사시 일관된 분석과 비교가 가능하도록 조사업체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 실태조사 후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조사대상 선정 시 확률추출 방식을 도입하고, 일관된 결과분석 보고서를 작성·배포하겠음('20년)</li> <li>- 구체적으로 KDI·통계청과 협업하여 조사표개선, 표본추출 방법 도입 등 서면실태조사 개선을 위한 통계개발 사업 추진 중</li> </ul>
<p>49. 하도급실태조사시 1차 하도급 관계 외에 2차 이하의 하도급 관계에 대해서도 자료를 보유하고 관심을 가질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도급 단계별 거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KDI·통계청과 협력하여 실태조사 설문지 개편작업을 진행중임</li> </ul>
<p>50. 하도급 벌점제도에 대한 실효성 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므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범정부·민관합동TF를 통해 마련한 벌점제도 개선방안*을 기 발표('19.12.18)</li> <li>*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및 거래관행 개선 대책</li> <li>- 현재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('20.8월말 완료예정)</li> </ul>
<p>51.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 하청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회사에 대한 보복행위를 근절 하려는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피해업체가 보복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여러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음</li> <li>* 신고인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 익명 제보센터 운용 중('15.3월~)</li> <li>** 하도급법상 보복행위를 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(3배) 대상이 되도록 하도급법 개정('18.1월)</li> </ul>

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하도급법상 보복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하겠음</li> </ul>
<p>52. 하도급법 상습위반자가 계속하여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은데,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상습법위반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 억지를 위해 상습법위반사업자에 대한 패널티제도*를 정비하고 있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① 공정위가 관계 부처에 명단을 통지하고, ② 관계 부처는 해당 사업자에 대해 패널티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패널티 부과 체계를 정비중임</li> </ul> </li> <li>*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구매시 신인도평가에서 상습법위반사업자에 대해 감점(중기부), 물품구매 적격심사·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상습법위반사업자에 대해 감점(조달청)</li> <li>- 또한, 상습법위반사업자에 대한 패널티 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임</li> </ul>
<p>53. 동반성장위원회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는데, 해당 기업에 대한 선정결과를 취소하고, 국토부 상호협력 평가점수에도 처분내용이 반영되도록 요구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평가시점(6월 말)과 조치시점(7월 이후) 간 차이로 인해 부조화가 발생한 바,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협약 및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신속히 소급 강등하였음('19.9.5.)</li> <li>- 등급이 조정된 평가 결과를 국토부에 전달하였으므로 올해 실시될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</li> </ul>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</p>
<p>54. 하청업체에 지급되어야 할 노무 공량을 빼돌렸다는 내용의 하도급법 위반신고 사건에 대한 심사불개시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, 이에 대해 재조사할 것</p>	<p>○ 신고, 재신고 등 두 차례에 걸쳐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법위반 혐의가 없어 무혐의 또는 심사불개시 처리하였음</p> <p>- 다만, 신고인이 기존 신고 자료외 새로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재재신고한다면 추가 검토하겠음</p>
<p>55. 학습지 사업자가 총판 대리점에 대해 물량밀어내기, 반품 제한 등을 한 혐의가 있으므로 조사할 것</p>	<p>○ 동 위반행위에 대한 대리점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임</p> <p>-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임</p>
<p>56. 완성차 업체와 정비협력업체 간 거래를 가맹거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할 것</p>	<p>○ 2019.12.20. 양 당사자간 ‘상생협약’에 따라 신고인이 신고취하서 제출</p> <p>- 양 당사자간 상생협약의 취지를 존중하고 신고취하된 점을 고려하여 본 사건은 심사절차종료 처리</p>
<p>57. 가맹본부의 원가공개,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부여 등의 문제는 가맹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성을 논의할 것</p>	<p>○ 가맹거래 특성상 존재하는 본부-가맹점주 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점주의 합리적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보공개서를 통해 필요최소한의 정보를 가맹점주에게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</p> <p>- 개별 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이나 가맹본부가 구입하는 개별 품목의 가격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, 가맹점주에게 필요최소한의 정보인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규모, 가맹점 공급가격 상·하한 등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한 원가공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</p>

<p>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</p>	<p>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</p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또한, 가맹거래에서는 가맹본부-가맹점 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공정한 협상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 제도적으로 단체교섭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</li> <li>* 이에 현행법상 점주단체 구성권 및 거래조건 협의요청권을 보장하고 있음</li> <li>- 다만, 가맹본부가 점주단체 대표성 등을 문제 삼아 현행법상 보장돼 있는 거래 조건 협의에 응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</li> <li>-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도 과도한 협상 요청으로 가맹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점주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고된 단체가 협의요청시 일정기간내 협의 개시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</li> <li>* 관련 법개정안 국회 계류 중(전해철, 이학영, 정인화, 지상욱, 김병욱 의원안)</li> </ul>
<p>58. 가맹본부의 원가공개, 예상매출액 공개, 가맹점주 단체협의권 보장 등의 제도 도입은 가맹본부의 혁신 유인 저해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가맹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57번 답변 내용과 같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음</li> </ul>
<p>59. 일부 대형유통업체가 계열사 편의점 영업지역 내에 가맹점 형태의 소매 점포를 출점하는 방법으로 가맹사업법 규제를 회피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해당 의원실에 추가 출점된 점포의 동일업종 여부 등 관련 이슈에 대한 설명을 완료하였음</li> <li>- 다만, 공정위는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</li> </ul>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</p>
<p>60. 치킨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 추상적으로 규정된 해지사유를 근거로 가맹점주에 즉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과 관련하여, 해당 가맹점주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</p>	<p>○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상적으로 규정된 즉시해지사유를 정비 완료함('20.4.28.)</p>
<p>61.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의무화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하여, 이에 대한 규제영향 등을 검토할 것</p>	<p>○ 직영점 운영 의무화가 진입규제로 작용할 수도 있으나, 미투브랜드 등 편법·부실 가맹본부로 인한 가맹산업의 공동부실화를 막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는 순기능이 더 크다고 판단됨</p> <p>○ 실제로 직영점 운영 경험은 가맹사업 수행에 큰 도움이 되고, 가맹점 매출 증진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9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직영점 운영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 비율은 59.6%이고, 직영점 운영경험이 가맹점 모집 및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가맹본부의 응답비율은 93.6%로 조사됨</li> <li>- 직영점을 운영하는 가맹본부가 그렇지 않은 가맹본부보다 소속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이 42,474천원(14.5%) 높게 나타남</li> </ul> <p>* 16~18년도 정보공개서 분석(송실대 박주영 교수, 14년 사업자등록 브랜드 대상 조사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직영점 수가 많을수록 소속 가맹점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</li> </ul> <p>* KDI 이진국, 2018</p>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</p>
<p>62. 편의점 간의 거리제한을 자율규약 형태로 하고 있고 이에 공정위가 동의하였는데 결국 이것이 담합 조장 행위가 아닌지 검토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업체간 자율규약은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일정 거리내에서 가맹점 출점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담합이라 보기 어려움</li> <li>- 자율규약은 그동안 과도한 신규출점 경쟁으로 인한 편의점 과밀화를 해소하고 편의점주의 경영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업계가 규약(안)을 만들고 공정위가 승인한 것으로,</li> <li>- 담배사업법에 따라 자치단체조례 등으로 정한 담배소매인 지정거리에, 추가적으로 상권의 특성, 유동인구 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출점하자고 한 것에 불과해 담합에 해당한다 보기 어려움</li> <li>○ 다만 공정위는 향후 편의점 자율규약 내용이나 운영에 있어 경쟁제한적 요소가 있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담합 우려를 차단하겠음</li> </ul>
<p>63. 글로벌 샌드위치 가맹본부가 매출이 높은 가맹점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별점을 부과하여 폐점 조치하고 직영점으로 전환한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020년 상반기내에 안전상정할 예정임</li> </ul>
<p>64. 일부 커피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출점 제한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해당 가맹본부에 대한 신고 건과 관련하여 면밀히 검토 중</li> </ul>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</p>
<p>65. 가맹분야에 있어 적극적이고 신속한 분쟁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가맹점주가 삶의 터전에서 보다 신속하고 원활히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도 분쟁조정협의회 설치*가 가능하도록 법개정 (19.1월)</li> <li style="margin-left: 20px;">* 기존 가맹점주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조정원(서울 소재)에 신청</li> <li style="margin-left: 20px;">- 이에 따라 작년 수도권 지자체(서울·경기·인천)에 이어 올해 부산시에도 분쟁조정 협의회 설치·운영( '20.2.10.)</li> <li>○ 향후 각 지자체 분쟁조정 담당자의 조정 역량 향상을 위해 공정위 주관으로 조정원·지자체 간 분쟁조정 경험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유해나갈 예정</li> </ul>
<p>66. 등산의류 업체가 매출이 높은 고속도로 휴게소 대리점을 일방적으로 직영화하면서, 인건비, 운영경비 등을 기존 점주에게 부담하게 하는 등의 부당행위에 대해 조사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2020년 2월 처리 완료함</li> <li style="margin-left: 20px;">- 거래상지위 남용 혐의에 대한 위법성 없음*. 다만, 향후 거래에서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거래조건을 설정·변경하는 등의 불이익 제공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함</li> <li style="margin-left: 20px;">* 계약체결 등에 있어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것으로서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</li> </ul>
<p>67. 복합쇼핑몰이 입점업체와 최저수수료를 보장하는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당사자 간 사적 계약에 의해 결정된 '최저보장수수료' 조건 자체를 유통업법상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</li> </ul>

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다만, ‘최소보장임대료’ 운영방식이 규정된 임대차계약서에 대해서는 관련 조항의 불공정약관 해당 여부를 검토 중에 있음</li> <li>○ 한편, 유통업법상의 위법 여부와는 별개로, 납품업자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위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음</li> <li>- 복합쇼핑몰을 포함한 주요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현황 등 분석·발표('19. 12.)</li> <li>- 복합쇼핑몰·아울렛 표준거래계약서* 제정·배포('20. 1.)</li> <li>* 거래 조건 사전 통지, 임대료 감액 청구권, 중도 해지 위약금 상한 등</li> </ul>
<p>68. 배달앱이 가맹점 간 영역구역을 침범하는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파악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가맹점주 간의 배달앱을 통한 영업 지역 침범 문제는 현행 가맹사업법상 규율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개별 가맹점주의 판촉확대에 따른 배달앱과 가맹점주 간의 계약에 따른 것임</li> <li>* 영업지역 침해금지(가맹사업법 제12조의4) 규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에 대한 규율임</li> <li>- 다만, 동일 브랜드 가맹점 간 배달 영업지역 침범 여부는 배달주문시 소비자 선택권, 개별 가맹점주의 판촉 확대전략, 본부·점주 간의 계약서상 배달영업지역 설정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현황 및 거래실태를 파악해보겠습니다</li> </ul>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</p>
<p>69. 인터넷 쇼핑몰이 최저가보상제로 발생한 비용을 납품업체에 매입 단가 인하, 장려금 또는 광고비 수취 등의 방법으로 전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조사할 것</p>	<p>○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임</p> <p>- 조사 결과 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도록 하겠음</p>
<p>70. 가맹사업이나 대규모유통업에 대한 실태조사시 일관된 분석과 비교가 가능하도록 실태조사 후 분석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</p>	<p>○ 작년 가맹·유통분야 실태조사 후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</p> <p>- (가맹분야) 가맹본부 및 가맹점 조사 결과 공개('20.1월)</p> <p>- (유통분야) 유통업체('19.12월) 및 납품업체 ('20.2월) 조사결과 공개</p> <p>○ 이러한 실태조사 및 분석 내용을 직권 조사 및 제도 수립 시 활용하고 있음</p> <p>* 불공정행위 경험 내용 중 온라인쇼핑몰의 최저가정책, 광고비 전가 등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조사 등에 반영</p>
<p>71. 가맹점들 사이에는 영업구역이 정해져 있고 침범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, 배달앱이 각 가맹점 간 영업구역을 침범할 수 있도록 마케팅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 방안을 강구할 것</p>	<p>○ 현행 가맹사업법상 규정된 영업지역 보호(가맹사업법 제12조의4)의 취지는 가맹본부가 해당 영업지역 내에 추가로 직영점 또는 가맹점 등을 개설하여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막으려는 것임</p> <p>- 반면 가맹점주가 배달앱 마케팅을 통해 영업지역을 벗어나 마케팅을 하는 것은 해당 가맹점주와 배달앱 간 계약에 의한 것으로, 법이 규율하고 있는 영업 지역 침범으로 보기는 어려움</p>

<p>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</p>	<p>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</p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다만 현행법 상 동일 브랜드 가맹점 간 영업지역 관련 분쟁은 가맹본부가 법상 영업지역 준수 강제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 분쟁을 조정하도록 유도 가능</li> </ul>
<p>72. 프랜차이즈 사업의 원가공개, 마진 공개 등에 대해 규정하는 시행령이 있는데 기업 활동을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규모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한 개정 시행령(19.1.1. 시행)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세부내용을 정한 것임</li> <li>- 다만 해당 시행령 개정내용의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(19.3월)되어 심리 중이므로 헌법소원 결정이 나오면 이에 맞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음</li> </ul>
<p>73. 공정위의 정책 기조가 프랜차이즈 산업에 상당히 부정적, 규제의 중복으로 이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성장이 정체되는 것을 경계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정위는 가맹점주 보호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산업의 질적 발전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각종 정책도 추진하고 있음</li> <li>- 미투브랜드 난립으로 가맹 브랜드가 공동부실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1+1 제도 추진</li> <li>- 가맹본부의 조속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착한프랜차이즈 우대조건 정책 자금 지원 사업 추진</li> <li>- 영세 가맹본부의 범위반 예방교육, 가맹점주의 합리적 창업지원 상담, 본부·점주간 상생협력확대 지원 등을 실시하는 가맹종합지원센터 위탁지정 추진</li> <li>- 그 밖에 제도개선 추진 시 프랜차이즈협회 등 가맹본부 측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</li> </ul>

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	<p>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, 가맹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타부처 소관의 경쟁제한적 법령 개정안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있음</p>
<p>74. 편의점 간 거리제한 규제를 사업자 간 자율규제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공정위가 이에 대해 동의하는 것은 경쟁주창자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지 면밀히 검토할 것</p>	<p>○ 업체간 자율규약은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일정 거리내에서 가맹점 출점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담합이라 보기 어려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자율규약은 그동안 과도한 신규출점 경쟁으로 인한 편의점 과밀화를 해소하고 편의점주의 경영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업계가 규약(안)을 만들고 공정위가 승인한 것으로,</li> <li>- 담배사업법에 따라 자치단체조례 등으로 정한 담배소매인 지정거리에 추가적으로 상권의 특성, 유동인구 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출점하자고 한 것에 불과해 담합에 해당한다 보기 어려움</li> </ul> <p>○ 다만 공정위는 향후 편의점 자율규약 내용이나 운영에 있어 경쟁제한적 요소가 있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담합 우려를 차단하겠음</p>
<p>75. 서울시가 제로페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편의점 가맹점에 제로페이 가입신청서를 일괄발송하면서, 특정 사업자단체의 가입신청서만</p>	<p>○ 해당 사안은 직접적인 가맹사업법 소관 사항이라기보다는 서울시와 특정 가맹점주 단체 간의 문제로서 공정위가 개입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임</p>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</p>
<p>동봉하여 보내고 있어 서울시에 재발방지를 요청할 것</p>	<p>*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또는 가맹점 사업자단체 간의 관계를 규율</p> <p>- 다만 향후 서울시와 분쟁조정 업무 협의 시 의원님의 우려를 전달하도록 하겠음</p>
<p>76. 폐업한 상조회사 서비스를 다른 회사의 상조서비스로 갈아타는 ‘내상조 그대로’ 서비스를 모든 피해자에게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</p>	<p>○ 폐업한 상조회사 피해자들의 주민등록 전산정보 현행화 작업 진행중이며 작업 완료 후, ‘내상조 그대로’ 서비스 재안내 예정임(6월)</p>
<p>77. 상조회사가 가입자로부터 납입 받는 상조금의 50%를 은행에 예치하는 제도 개선안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</p>	<p>○ 할부거래법은 선수금*의 50%를 보전** 하기 위하여 상조회사로 하여금 은행 또는 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</p> <p>* 상조회사가 가입자로부터 납입 받는 상조금</p> <p>** 보전 방법으로는 예치계약(은행), 공제계약(공제조합), 지급보증계약(은행) 등이 있음</p> <p>- 공제조합과 은행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제조합의 담보율*을 점진적으로 상승**시키는 중이며,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상승도 검토 중임</p> <p>* 상조회사가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선수금의 비율 (은행 예치율과 동일한 개념)</p> <p>** (한상공) (기존) 20%~50% &gt;&gt; ('22년) 32.5%~62.5%, (상보공) (기존) 15%~25% &gt;&gt; ('22년) 18%~35%</p>
<p>78. 아모레퍼시픽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에 대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과징금을 조속히 재산정하여 부과할 것</p>	<p>○ 법원 판결 취지*에 따라 과징금을 재산정(5억원)하여 부과(제2019-285호, 2019.12.10.)</p> <p>* 부당한 불이익의 기준은 ‘방판특약점 개설 당시 지원한 수준을 초과하여 세분화를 강요</p>

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	<p>하였는지 여부'이고 모든 세분화 행위(특정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다른 특약점에 임의로 재배정하는 행위)가 이를 충족한 것은 아님</p>
<p>79.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, 인력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위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</p>	<p>○ 예산·인력 부담은 운영상의 문제로서, 필요 예산 및 인력의 적시 확보를 위해 소비자원과 공정위 간 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</p> <p>* 공정위는 1372의 위탁운영비 2,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'20년도 예산에 반영</p>
<p>80.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업이 CCM인증을 받는 등 CCM 제도 운영에 있어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책을 마련할 것</p>	<p>○ 법위반,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인증 취소 등 엄격한 운영과 함께 인증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취소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제도개선을 검토 중임</p>
<p>81. 완성차 업체의 순정부품 관련 광고가 타 부품업체의 인증부품 품질을 오인하게 할 우려는 없는지 부당한 표시·광고 여부를 조사할 것</p>	<p>○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현재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음</p> <p>- 법위반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조치할 계획</p>
<p>82. 국내 항공사 마일리지의 유효기간, 사용방법 등이 소비자에게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마일리지 유효기간 폐지, 파트 캐시 제도, 보너스 좌석 차별 폐지 등의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</p>	<p>○ 복합결제 제도 도입 및 시행</p> <p>- 대한항공은 2020.11월부터 2022년까지 2년간 복합결제 제도를 운영하기로 함</p> <p>*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코로나 이후 항공업계 상황 및 매각작업을 보고 추진 검토</p> <p>○ 보너스 항공권 확대</p> <p>- 매년 적립되는 마일리지 증가(연평균 11%)됨에 따라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보너스 항공권 공급량도 확대하기로 함</p>

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83. 웹툰작가 및 플랫폼사업자 간 표준계약서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 및 교육·홍보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만화제작 관련 국가예산 지원 대상 사업자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(64개사 완료)</li> <li>- 국고지원을 받는 사업자의 경우 표준계약서 교육 수수료 의무화 및 표준계약서 온라인 교육 실시(완료)</li> <li>- 사업자 대상 집합교육 실시 예정 (80여개사 대상)</li> <li>- 표준계약서 확산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실태조사 추진</li> </ul> </li> </ul>
84. 글로벌 OTA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글로벌 OTA의 불공정약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위원회에서는 ‘16년 7개 글로벌OTA*의 불공정약관**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개 사업자(아고다, 부킹닷컴)는 시정명령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함(‘19.3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부킹닷컴, 아고다, 익스피디아, 호텔스닷컴 등</li> <li>** 숙박취소시점에 대한 고려없는 100% 환불불가 조항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li>○ 다만, 재판부*는 글로벌 OTA에 대하여 약관법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판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서울고법 2020.5.20.선고 2019누38108 판결 (부킹닷컴)</li> <li>- 본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</li> </ul> </li> <li>○ 위원회는 여행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문체부 공동으로 민관협의체 구성(‘19.9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내외 온라인 여행업체 등이 참여하여 업계의 자율규제체계를 수립할 계획</li> </ul> </li> </ul>

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<p>85. 약관심사 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하고 금융위에 금융약관 심사결과 통보 빈도를 높이는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약관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2019년 총 1,393건의 금융약관 심사를 통해 총 32건의 불공정 약관 발굴 및 금융위에 시정요청</li> <li>○ 금융약관 심사의 신속·효율화를 위해 지속 노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분야별(은행/상호저축, 금융투자, 여신전문) 전담인력 지정을 통해 전문화·신속화 도모</li> <li>- 금융위와의 협업 방법(금융전문인력 지원 등) 등에 대해 논의</li> </ul> </li> </ul>
<p>86. 동의의결제도 및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실적이 저조하므로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동의의결은 ' 11.12월 도입 후 총 18건, 사전심사는 ' 04.12월 도입 후 총 127건을 처리하여 실적이 저조하다고 보기는 어려움</li> <li>○ 동의의결 제도에 대해서는 기업 봐주기 라는 비판도 있으나,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속하게 범위반상태를 해소하고 직접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하다는 명확한 장점이 있음</li> <li>- 또한, 동의의결 이행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었으므로, 제도를 지속 보완하면서 적극 활용해 나가겠음</li> </ul> </li> <li>○ 사전심사는 심사 후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사후 법적 조치를 받지 않게 되므로 엄격히 운용되어야 하는 제도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그럼에도, 18년 10건 처리되면서 증가 추세에 있음</li> <li>- 앞으로도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</li> </ul> </li> </ul>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</p>
<p>87. 부과 과징금 산정 방식과 관련하여 기존 관련 매출액 기준에서 평균 매출액 기준 또는 기업규모별 부과 방식 등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</p>	<p>○ 부과과징금 산정 방식과 관련하여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정위는 과거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, 사안별 구체적 타당성 있는 과징금 부과를 위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'04. 1월 관련매출액 기준을 도입한 것임</li> <li>- 과징금 산정 기준을 평균 매출액으로 정할 경우 기준 자체가 명확하여 계산이 쉽고 예측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으나,</li> <li>-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될 우려가 있음</li> <li>- 특히 공정거래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시 ‘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등’을 고려하여야 하는바(제55조의3 제1항),</li> <li>- 위반행위가 전체 사업규모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,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의 고려 없이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은 위법할 수 있음</li> </ul> <p>* 평균매출액 기준에 따른 과징금 부과가 위법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크게 초과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로, 大判 2000두6206 참조</p>

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다만, 관련매출액 기준이 적절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별도로 계약 금액(영 제9조제1항 단서)이나 평균 매출액(영 제9조제2항)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고 있으며,</li> <li>-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액과징금(영 제10조)을 부과하는 등, 각 행위 유형별로 적정한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있음</li> </ul> <p>○ 기업규모에 따라 과징금 산정 시 부과 기준율에 차등을 두는 방안은 최근 실시한 과징금 연구용역*에서 제안된 내용임</p> <p style="margin-left: 40px;">*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의 비교법적 연구('18.12월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한 부과 기준율을 적용하게 되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더 큰 제재가 이루어지게 되므로,</li> <li>- 과징금 산정 시 기업규모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의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는 취지임</li> <li>- 공정위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각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과징금 제도 개선방안을 신중하게 마련할 계획임</li> </ul>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</p>
<p>88. 공정위의 시행령, 시행규칙 등 개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, 규제강화와 규제완화의 비율이 5:1로 나타나는 등 규제 강화 경향이 강한 바, 이는 시장경제를 위축시키는 효과로 작용하므로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법안의 경우, 규제 존속 및 완화 여부에 대하여 규제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*할 예정임</li> <li>*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매 3년마다 규제를 재검토하고 있음</li> <li>- 또한, 규제강화 법안은 반드시 필요한 규제사항만 도입되도록 신중히 검토하여 진행하겠음</li> </ul>
<p>89.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건이 법원에서 패소함에 따라 과도한 환급가산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, 공정위의 경제분석 역량 확충 등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경제분석 인력을 지속적으로 채용 중이며, 선진 경쟁당국과의 교류 확대*를 통해 기존 직원의 역량도 강화하고 있음</li> <li>* 올해도 작년에 이어 미국 경쟁당국과 「지식공유 프로그램」을 통해 최신 경제분석 사례를 공유할 예정</li> <li>○ 소송 과정에서도 경제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</li> <li>○ 또한 합리적인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의 개선을 추진해오고 있으며, 향후에도 관련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음</li> </ul>
<p>90. 공정위의 조사권 남용 억제 및 공정위 조사에 대한 기업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공정위 조사절차 규정을 법제화하여 투명하게 운영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20대 국회에서 기업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보완하는 내용의 조사절차 규정이 법제화되었음(20.5월)</li> <li>- 개정 법률에 따라 향후에도 조사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음</li> </ul>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</p>
<p>91.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경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접수되는 고발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우리나라 기업 및 경제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폐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속고발제 폐지는 범위반 억지력 제고를 위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되었음</li> <li>- 법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기업부담 등을 고려하여 전속고발제 폐지대상을 가별성이 큰 일부 담합행위*에 한정하였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가격 담합, 생산량 담합, 시장분할 담합, 입찰 담합 등 4개 분야의 담합</li> </ul> </li> <li>○ 향후 전속고발제 폐지 문제는 국회와 정부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될 사안이며, 만약 국회의 법률개정을 통해 제도가 폐지되더라도 기업에게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위는 검찰과 긴밀히 협력하겠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공정위와 검찰은 중복조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처리기준을 이미 마련('19.1월)하였고, 앞으로 이 기준이 충실히 시행되도록 할 예정</li> <li>① (공정위) 가격담합·생산량담합·시장분할담합 사건과 자진신고 없는 입찰담합 사건을 우선 조사</li> <li>② (검찰) 자진신고 사건 중 입찰담합 사건과 시효1년 미만 사건 중 신속 수사 필요 사건을 우선 수사</li> </ul> </li> </ul>

《한국소비자원 소관》

<p>시정·처리 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</p>	<p>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</p>
<p>1. 음식점 폐업으로 피해를 보는 예비신혼부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분쟁해결기준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등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토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의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권고 기준이 되는데, 음식점이 폐업한 경우 사업자 대상 합의권고 진행이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함</li> <li>○ 이에 음식점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지원을 위해 소송 등의 절차 안내 및 관련 소비자 피해 모니터링을 강화함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으로 관련 분쟁이 더욱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 발생 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 하고 있음</li> </ul> </li> <li>○ 음식점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 및 분쟁 해소를 위한 ‘소비자피해예방 주의보 발령’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임</li> </ul>
<p>2. 스포츠, 레저, 건강 등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며 헬스장·피트니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맞춤형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 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헬스·피트니스 관련 직원 전문성 강화 및 협업체계 정비로 맞춤형 피해구제 추진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헬스·피트니스 등 계속거래 관련 직원 전문화 교육 실시(' 20.1월)</li> <li>- 지역별 담당자 간 유기적 협업 강화를 위해 헬스·피트니스 피해구제 정보 공유(' 20.4월)</li> </ul> </li> <li>○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표준약관 사용 권장 등 헬스·피트니스 다발·상습 피해 감축방안 검토 예정('20년)</li> </ul>

시정·처리 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<p>3. LG건조기 자동세척 하자에 대한 소비자원 조치결과가 소비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,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무상수리 권고 후속조치로서 분기별 모니터링 실시 및 필요 시 추가조치 권고</li> <li>- 3개월 경과에 따른 현장점검 완료 ('20.2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먼지축적 현상 개선 여부를 위한 실사용 소비자 제품 확인결과, 이상 없음</li> <li>· 수리로 인한 소음 등 기능불량 증상 발생 여부 확인을 위한 LG전자 내 입고 제품의 수리 전·후 비교 시험결과, 이상 없음</li> </ul> </li> <li>- 향후 수리 후 6개월, 12개월 경과 제품 추가 점검 예정</li> <li>· 점검결과에 따른 특이사항 발생 여부 확인 후, 필요 시 추가조치 권고 등 검토</li> </ul>
<p>4. 고령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지자체 협업 및 교육프로그램 마련 등 고령 소비자가 디지털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고령소비자 교육 개선 관련 체계적 연구* 수행으로 고령소비자 교육 내용 다각화 및 전문강사 교육 개선 방안 검토</li> <li>* 고령자 대상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개선 방안 연구('19.11월)</li> <li>○ 고령소비자 대상 소비자교육 시 비대면거래 관련 주요 소비자정보 제공 강화</li> <li>- 비대면거래 기기 및 주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사용 방법, 보이스피싱·</li> </ul>

시정·처리 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	<p>스미싱 사례 및 대응법 등 고령자 맞춤형 교과 개설 및 콘텐츠 제작·배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업 ‘시니어 소비자 지킴이’ 양성 과정에 모바일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효과적인 소비자정보 탐색 관련 교과 포함 ('19.12월) 및 '20년 전국 시니어지킴이 양성 과정에 활용(연 6회 예정)</li> <li>○ '20년 고령소비자 등 취약소비자보호 법제 개선방안 연구 추진 및 전국 시니어 소비자지킴이 사업의 지속 확대 예정</li> </ul>
<p>5.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은 당사자 일방의 거부 시 불성립 되므로 조정결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취약계층 및 소액 피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소비자소송지원제도*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근거: 한국소비자원 「소비자소송지원 제도 운영지침」</li> </ul> </li> <li>- 사회적 배려계층 및 소가 3천만원 이하 사건을 포함하여, 기존에 특정 분야(품목)*로 한정하던 소송지원 대상을 전문적·기술적 사건 전반으로 확대('20.3.30.지침개정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기존 소송지원 대상 품목: 의료, 금융, 보험, 주택, 자동차, 농업</li> </ul> </li> <li>- 소송지원변호사 확대 위촉을 통한 소송지원 활성화 도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'20. 5.현재 소송지원변호사 수는 43명이며, 12명 추가 위촉 진행 중</li> </ul> </li> </ul>

시정·처리 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자 간담회 활성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다발 접수 및 불수락 사업자 대상 간담회를 통한 분쟁 해결방안 및 유사사건 재발 방지 대책 마련</li> <li>* 2018.11. 항공운송 사업자 간담회 개최 후 주요 항공사의 불수락 비율 개선 [대한항공 '18년 16건(88.9%)→'19년 6건(42.9%)]</li> </ul> </li> <li>○ 조정 거부 사업자에 대한 위법사실 통보 시행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위법사실이 있는 사업자가 조정결정 거부 시 위원회가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 방안 단계별 추진</li> </ul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시행(안)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(1단계) 위법사실 통보 의무가 있는 피해 구제 부서 협조 요청</li> <li>* (2단계) 위법사실이 있는 사업자가 조정 결정 거부 시 분쟁조정 단계에서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</li> </ul> </div> </li> </ul>
<p>6. 해외리콜 제품의 국내 지속 유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바,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하여 근본적 유통 차단 대책을 마련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‘해외위해제품관리실무협의체’ 발족을 통한 유관부처·기관 간 협업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정위·관세청·국표원·소비자원·식약처·환경부 등 6개 부처·기관 간 협의체 발족 및 1차 회의 완료('20.3월)</li> <li>- 협의체를 통한 주요 논의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을 포함한 해외 위해제품에 대한 각 부처·기관별 조치내역 매월 공유*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

시정·처리 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'20년 3월 조치내역 공유 및 중복조치 여부 확인 완료(5.6.), '20년 4월 조치내역 공유(5월말 예정)</li> <li>·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 원천 차단을 위한 공동조치* 수행</li> <li>* 해외직구로 유입되는 미인증 '주방용 오물 분쇄기' 국내 유통 차단 진행 중('20.5월)</li> <li>· 국내 안전기준 미비 제품에 따른 기준 마련 필요성 검토 등 제도개선 방안 모색</li> </ul>
<p>7. 유사홈쇼핑 및 케이블 TV를 통해 다양한 사은품으로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검토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유사홈쇼핑 및 케이블 TV 보험 판매 방송 모니터링</li> <li>- 고액 사은품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자 자율시정 권고 및 관계기관 통보 등을 통해 개선 노력 강화</li> </ul>
<p>8. 품질 및 안전선 검사를 위해 시험 검사용 물품·시료를 관리하는 규정 및 시스템에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, 관리 규정 및 시스템을 개선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시료의 활용 기준 명확화 : 관련 지침 개정완료('19.12월)</li> <li>- 공익기관 기증 원칙, 기관운영 활용은 소비자 교육용 홍보관 전시, 공익기관 기증 거부 시료 등 제한적으로 허용</li> <li>○ 체계적인 시료관리(on-line)시스템 구축완료('20.1월)</li> <li>- 구입, 보관, 상태 판단, 이관, 처분, 기관운영 활용 시료의 관리 등 시료와 관련된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관리</li> </ul>

시정·처리 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9. 집단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분쟁조정총괄팀 신설('19.1월)을 통한 효율적 조직 운영 및 집단사건 전담 조정관 배치('20.1월)로 체계적인 사건처리 시스템 운영</li> <li>○ 집단사건 사업자 간담회를 통한 분쟁 해결방안 등 논의 및 사업자의 조정 결정 거부로 인해 불성립된 사건에 대한 소비자소송지원 활성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소송지원대상 확대('20.3.30.), 소송 지원변호사 확충('20.5월 위촉 진행)</li> </ul> </li> </ul>
10. 대학생 광고감시단의 부당광고 감시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학생 광고감시단 확대 운영을 통한 광고감시 활동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학생 광고감시단 인원 확대(10개팀 26명→20개팀 43명) 및 운영기간 연장(2개월→3개월)과 유관기관 연계 교육을 통한 감시기능 강화</li> <li>- 게임, 미용기기, 취업 관련 서비스 등 대학생 관심 품목에 대한 맞춤형 광고감시 추진</li> </ul> </li> </ul>
11. 퇴직 예정자 교육과 관련한 예산 효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할 것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라는 본래 교육 목적에 부합한 실효성 있는 교육 제공</li> <li>○ 본래 취지에 맞는 교육비 지원 및 점검을 통한 교육 관리 강화</li> </ul>
12. 외교부 여행경보로 인한 여행상품 계약 취소 시 무료취소 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약관 또는 법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정부(공정위, 기재부, 고용노동부 등)의 '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'의 일환으로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발생</li> </ul>

시정·처리 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	<p>시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해 위약금 관련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할 예정인 바, 이에 적극 협력 예정</p> <p>○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, 글로벌 OTA(Online Travel Agency)를 대상으로 소비자가 코로나19로 인해 계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 없이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합의권고 하고 있음</p> <div style="border: 1px dotted black; padding: 5px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&lt; 여행업 표준약관(국외여행표준약관) &gt;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제12조(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) ①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2. 천재지변, 전란, 정부의 명령, 운송·숙박기관 등의 파업·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</li> </ul> </li> <li>· 제16조(여행출발 전 계약해제) 여행자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2.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 </div>

《한국공정거래조정원 소관》

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1. 최근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조정 기간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 검토할 것	○ 2017~2018년 분쟁조정 사건이 급증하면서 처리기간이 다소 지연된 측면이 있음. 추후 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출석조사를 강화하는 등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
2. 최근 조정성립률이 하락하고 조정 기간은 길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의 조정 참가를 의무화하고 조정이 성립되면 당사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	○ 조정원은 향후 분쟁조정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결정 권한 있는 자가 조정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조정절차의 신속성과 확실성을 담보하는 등 조정성립률을 개선하고 처리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- 당사자의 조정 참가를 의무화하고 조정이 성립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은 법 개정 사항임
3.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분쟁조정이 종료된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는데, 관련 보고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	○ 조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7 제5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정원에 접수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되면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음 - 조정절차 종료 후 이를 보고하는데 있어 누락 등의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음
4.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를 보다 활성화할 것	○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는 당사자가 생업 등으로 인하여 분쟁조정절차에 참여하기 곤란한 분쟁조정 취약계층의

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	<p>불편 해소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이며, 조정원에 접수된 모든 사건에 원칙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님</p> <p>- 다만 앞으로 인력·예산사정에 따라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음</p> <p>* 2019년 42건, 2020년(4월말 현재) 12건의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추후 계속 확대 실시 예정임</p>
<p>5.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(CP) 등급 평가 위원회 평가기준과 능력이 상이한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 검토할 것</p>	<p>○ 평가위원 전문성 및 평가 일관성 제고 등을 위해 평가위원 임기를 연장(1년 ⇒2년)하였으며, 평가위원 대상 평가 가이드라인 활용 등에 관한 사전 교육도 매년 추진 중에 있음</p>